

의안번호	제 263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
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4월 10일

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국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4월 10일

발 의 자 : 김국기, 박경숙, 김꽃임, 이양섭,
이의영, 이종갑, 임병운 의원

1. 제안이유

-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, 상위법인 「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·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- 특화작목발전협회 설립 및 운영(안 제8조)
- 업무의 위탁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생략(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)
- 협의 :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작물연구과
- 비용추계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)

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「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내”를 “충청북도 내”로, “기여함”을 “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”를 “법 제5조”로, “5년마다 수립·시행”을 “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.

제5조제1항 중 “지역특화작목”을 “발전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”으로, “육성을 위하여 제4조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”를 “육성에 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,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,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제5호”를 “제2항제5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추진 실적”을 “추진 실적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특화작목육성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둔다”를 “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명하며, 간사는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으로 한다”를 “지명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“도의원”을 “충청북도의회의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심의가”를 “협의·조정이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내에서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농업기술실용화재단”을 “한국농업기술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실천계획(이하 “실천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(定性的)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(定量的)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<u>추진 실적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제5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<u>추진실적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특화작목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<u>둔다</u>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회의</u>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7조(특화작목육성위원회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성·운영</u> <u>할 수 있다</u>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회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<u>지명하며</u>, 간사는 <u>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으로 한다.</u>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<u>지명한다.</u></p>
<p>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<u>도의원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	<p>⑤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충청북도 의회의원</u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<u>심의가</u>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⑥ ----- ----- <u>협의·조정이</u> ----- -----.</p> <p>⑦ <u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으로 한다.</u></p>
<p>제8조(협회의 설립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협회는 <u>도내에서</u>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8조(협회의 설립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다음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제 6조에 따른 실용화 촉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<u>농업기술실용화재단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9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한국농업기술진흥원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특화작목”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,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.
2. “지역특화작목산업”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·유통·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3. “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”이란 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기술이전”이란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사업화”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·생산 또는 유통·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발전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(중략)

⑤ 시·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실천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·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(이하 “실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(중략)

⑤ 그 밖에 실천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의 수립·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) 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발전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제17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시·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② 농촌진흥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2조(발전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(중략)

③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지역특화작목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2.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
제13조(실천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(이하 “실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(定性的)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(定量的)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산 집행 실적
2. 정성적·정량적 목표의 달성도
3.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 성과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협회에 위탁한다.

(중략)

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 <개정 2022. 2. 22.>

1.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
2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,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,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

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률인 「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·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-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함
- 제9조 1항의 ‘농업기술실용화재단’을 ‘한국농업기술진흥원’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